

단체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.

- 2004년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,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, 9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, **단체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**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,
 - 제명인 “단체교육상조례”를 “충청북도단체교육상조례”로 하여 시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, 시상부문 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는 등,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.

- 주요 내용으로는,
 - 제명인 “단체교육상조례”를 “충청북도단체교육상조례”로 하고,
 - 시상부문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며(안 제1조 내지 제3조),
 - 추천권자를 ‘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, 교육장, 고등학교장’에서 ‘직속기관장’을 추가하고(안 제4조제1항),
 - 심사위원수를 “15인 이내”에서 “13인 이상 15인 이내”로 하며 (안 제5조제2항),
 - 위원 자격을 “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·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”로 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 (안 제5조제3항)
-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금번 제출된 “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”은

- 단재교육상의 시상주체를 명확히 하고, 수상대상자 추천권을 직속기관장에게도 부여하며, 심사위원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현행 규정에 없는 위원자격 조항을 신설하는 등 단재교육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그러나,

- 시상부문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려는 이유와 향후 학생부문의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.

□ 이상으로 “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<참고사항>

현행과 달라지는 주요 개정내용

조례별 내용별	현행	개정안
시상부문	1. 교원 및 일반부문 가. 학술상 나. 사도상 다. 공로상 2. 학생부문 가. 면학상 나. 충효상 다. 봉사상	1. 사도부문 2. 학술부문 3. 공로부문 * 학생부문 삭제
수상대상자	학술상 및 사도상의 경우, 現職 교원·교육전문직만 해당	현직뿐 아니라, 前職 교원·교육전문직도 해당
추천권자	충청북도 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, 교육장, 고등학교장	직속기관장 추가
심사위원회 구성 시기	수상대상자 추천마감(9월말) 후	별도 규정 없음
심사위원수	15인 이내	13인 이상 15인 이내
위원자격	별도 규정 없음	충청북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·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
간사 등	간사 : 1인 서기 : 1인	간사 1인 : 중등인사담당